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6

발의연월일: 2020. 8. 14.

발 의 자 : 윤한홍 · 조경태 · 윤두현

최형두・추경호・김영식

홍준표 • 권성동 • 한무경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종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조의 폐지신고 등 여러 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신고 제도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는데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보다 명 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신고의 처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신고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9조, 제1

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 등).

법률 제 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

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제1항제10호 중 "제12조제6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 다.

제1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3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5항, 제5조의2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u>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u>
	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u><신 설></u>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
	<u>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u>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
	런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
	<u>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u>
	<u>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u>
	런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
	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
	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u>것으로 본다.</u>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의 제조신고) ① (생 략)	의 제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u>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u>
	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u><신 설></u>

② (생략)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 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 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 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 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u>수리</u>	여부	를 신	고인역	세게	통지
하여	야 한디	<u>}.</u>			
3 2	산업통	상자원	<u></u> 부장	관이	제2
항에/	서 정	하 기	강 1	게 에	시 고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 런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 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 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 런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 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 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

세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
지 등) ①	

다만, 제1호·제3호·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 1. ~ 9. (생략)
-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제1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11. ~ 17. (생략)
- ② (생략)
-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① (생략)

<u><신 설></u>

② (생략)

제11조(수출규제) ①·②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12조제7항</u>

- 11. ~ 1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① (현행 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 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 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11조(수출규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 략) 제12조(수입규제) ①·② (생 략)

<신 설>

③ ~ ⑥ (생 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 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 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2조(수입규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 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 다.

<u>④</u> ~ <u>⑦</u>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u>8</u>	
	<u>제7항</u>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신 설>

④·⑤ (생 략)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량 등의 신고) ① (생 략)

<신 설>

② (생략)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7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 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 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 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량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 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 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	· 2.	(생	략)

3. 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 항 또는 <u>제5항</u>을 위반하여 특 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제6항</u>
4. (현행과 같음)